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31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3. 3. 22.

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3. 3. 31.)

상정, 심사, 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어르신동행과장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 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 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, 설치, 등록, 운영기준(안 제3조 ~ 제5조)
- 3) 공동거주시설의 지원계획 수립, 지원, 점검 관련(안 제5조 ~ 제8조)
- 4) 지도점검, 입소비용, 다른 조례의 준용(안 제9조 ~ 제11조)

3. 검토보고 (장흥용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- 우리 사회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, 자살위험, 우울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공동생활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이나 고립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공동거주 시설등록 신청 및 절차, 등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등록된 공동거주 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,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중단, 지도·점검 등을 정함은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공동거주시설이 야간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, 선발기준 및 퇴소기준 등 운영전반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.
- 또한 수혜 대상이 어르신들이므로 공동거주시설 설계 시 배리어 프리 (장애인들이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·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)와,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,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 (수정안 불임)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2. 3. 22.] [법률 제18609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[제2조](#)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24.>

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
2. 마포구 독거노인 동별 현황

(2023. 1.현재 / 명)

| 구분 | 계 | 남 | 여 | 비고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계 | 13,378 | 3,740 | 9,638 | |
| 아현동 | 702 | 185 | 517 | |
| 공덕동 | 1,737 | 512 | 1,225 | |
| 도화동 | 877 | 246 | 631 | |
| 용강동 | 708 | 204 | 504 | |
| 대흥동 | 652 | 219 | 433 | |
| 염리동 | 584 | 178 | 406 | |
| 신수동 | 713 | 199 | 514 | |
| 서강동 | 655 | 174 | 481 | |
| 서교동 | 811 | 259 | 552 | |
| 합정동 | 663 | 199 | 464 | |
| 망원1동 | 861 | 234 | 627 | |
| 망원2동 | 698 | 176 | 522 | |
| 연남동 | 540 | 166 | 374 | |
| 성산1동 | 675 | 196 | 479 | |
| 성산2동 | 1,781 | 415 | 1,366 | |
| 상암동 | 721 | 178 | 543 | |

3. 2023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

- 서강정보화 교육장(서강로 1길 30) 리모델링
- 노인공동생활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: 1,722,919천원 편성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3-30 관련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3. 3. 31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중단의 유예기간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,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8조제1호 중 “3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나. 별지 서식 신청서 중 “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”를 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3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별지 서식 신청서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”로 한다.

